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441

제안년월일 : 1995.12.27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외10인

1. 수 정 이 유

o 안산시 주구운동장은 시민들의 여가선용및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건립된 것으로 일시에 11~20%의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생활안정 및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상율을 하향조정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o 제7조 제1항 별표1의 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수정함. (하향조정)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안산시주구운동장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별지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		경기이외 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3,000	34,000	46,000	65,000	
	야간	34,000	50,000	65,000	10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3,000	34,000	46,000	65,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2시간
	야간	5,000	10,000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3일이상 경기나 행사는 제3일로부터 50% 감면한다.
-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	
체육관	1인 2시간당	1,200	6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	1,200	600	
테니스장	〃	2,400	1,200	

- 단체는 동일소속팀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월회원은 단체 기본료 50%의 20일분을 사용료로 일괄 징수한다.
- 단체사용료 징수금은 인원 x 1인당 단체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경기장에서 초, 중, 고 및 시.도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은 무료 (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10일 이내로 한정)로 한다.
- 보조경기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현 행

제7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운동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		경기이외 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0,000	30,000	40,000	60,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야간	5,000	10,000			2시간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	
체육관	1인 2시간당	1,000	5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	1,000	500	
테니스장	"	2,000	1,000	

개 정 안

제7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운동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체육경기		경기이외 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3,000	35,000	46,000	70,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야간	5,000	10,000			2시간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
		개인	단체	
체육관	1인 2시간당	1,200	6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	1,200	600	
테니스장	"	2,400	1,200	

수 정 안

제7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운동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체육경기		경기이외 행사		비고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3,000	34,000	46,000	65,000	
	야간	34,000	50,000	65,000	10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3,000	34,000	46,000	65,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야간	5,000	10,000			2시간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 개정안과 같음.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1

제출년월일 : '95. 11.
제 출 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는 동조례 제정 당시('92.10.27)의 사용료로서 그동안 물가상승 및 민간체육시설업의 사용료등이 인상됨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를 인상코자함.

○ 사용료 인상으로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 재원 확보

□ 주요골자

○ 현행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 제7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운동장 사용료 요금의 조정

- ㅇ 전용사용료 : 약 11% ~ 17%인상
- ㅇ 단체 및 개인사용료 : 약 20%인상

□ 참고사항

○ 주구운동장 현황

ㅇ 총 계 : 24개소 340,940.9㎡
. 주거단지 : 18개소 243,063.9㎡
. 공업단지 : 6개소 97,877㎡
ㅇ 조 성 : 21개소 306,723.4㎡
. 주거단지 : 16개소 222,661.5㎡
. 공업단지 : 5개소 84,061.9㎡

○ 실내체육관 현황

ㅇ 관산체육관

. 위　　치 : 안산시 원곡동 936-5

. 면　　적 : 803㎡

. 경 기 장 : 배구,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기타

. 개장일자 : '93. 9. 2.

ㅇ 구릉체육관

. 위　　치 : 안산시 이동 609-3

. 면　　적 : 725㎡

. 경 기 장 : 배구,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기타

. 개장일자 : '93. 9. 8.

○ 관리운영내역 (1994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료수입	관리비지출	증 감	관리비 지출 내역	비 고
합 계	31,609	139,814	△ 108,205		
구룡체육관	3,537	17,315	△ 13,778	인건비 13,500 공공요금 2,680 연료비 1,135	청경 1명
판산체육관	1,372	17,399	△ 16,027	인건비 14,500 공공요금 2,004 연료비 895	청경 1명
양궁경기장	1,200	48,300	△ 47,100	인건비 37,000 공공요금 2,800 시설유지비 8,500	청경 3명
원시운동장	1,900	5,900	△ 4,000	인건비 5,000 공공요금 900	일용직 1명
노적봉 테니스장	23,600	50,900	△ 27,300	인건비 41,400 공공요금 3,500 시설유지비 6,000	청경 3명 일용직 1명

※ 기타주구운동장 관리비 지출 : 91,354천원

- 시설유지비 : 71,536천원
- 인 건 비 : 14,645천원
- 공 공 요금 : 5,173천원

○ 사용료인상 및 관리인원 조정후 기대효과

(단위 : 천원)

구 분	사용료수입	관리비지출	증 감	관리비 지출 내역	비 고
합 계	9,211	50,914	△ 41,703		
구룡체육관	4,068	17,315	△ 13,247	인건비 13,500 공공요금 2,680 연료비 1,135	청경 1명
관산체육관	1,578	2,899	△ 1,321	공공요금 2,004 연료비 895	△ 청경 1명
양궁경기장	1,380	24,800	△ 23,420	인건비 13,500 공공요금 2,800 시설유지비 8,500	청경 1명 △ 청경 2명
원시운동장	2,185	5,900	△ 3,715	인건비 5,000 공공요금 900	일용직 1명
노적봉 테니스장					테니스협회위탁

현 행		조 정 후	
△ 80,905천원	→	△ 41,703천원	
		효과	39,202천원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경기이외 행사		고
		평 일	공 휴 일	평 일	공 휴 일	
실내체육관	주 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 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3,000	35,000	46,000	70,000	
테니스장	주 간	5,000	7,000			1코트(2시간)
	야 간	5,000	10,000			1코트(2시간)

○ 초과사용료는 시간당 주간은 사용료의 1할, 야간은 사용료의 2할을 가산하고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3일이상 경기나 행사는 제3일로부터 50%감면한다.

○ 조기 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한다.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 육 관	1인 2시간당	1,200	600	
원 시 운 동 장 양 궁 경 기 장	"	1,200	600	
테 니 스 장	"	2,400	1,200	

○ 단체는 동일소속팀의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 월회원은 단체 기본료 50%의 20일분을 사용료로 일괄 징수한다.

○ 단체사용료 징수금은 인원x1인당 단체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경기장에서 초, 중, 고 및 시.도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은 무료 (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10일이내로 한정)로 한다.

○ 보조경기장은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제7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운동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경기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0,000	30,000	40,000	60,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야간	5,000	10,000			2시간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 육 관	1인 2시간당	1,000	5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	1,000	500	
테니스장	•	2,000	1,000	

개 정 (안)

제7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운동장의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운동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별표 1]

가. 전용사용료 (단위 : 원)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경기이외 행사		비 고
		평 일	공휴일	평 일	공휴일	
실내체육관	주간	23,000	35,000	46,000	70,000	
	야간	35,000	50,000	70,000	100,0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1일	23,000	35,000	46,000	70,000	
테니스장	주간	5,000	7,000			1코트
	야간	5,000	10,000			2시간

나. 단체 및 개인사용료 (단위 : 원)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체 육 관	1인 2시간당	1,200	600	
원시운동장 양궁경기장	•	1,200	600	
테니스장	•	2,400	1,200	